

목차

싱가포르 국제조정 센터 조정규칙		
규칙 1	규칙의 적용	2
규칙 2	조정의 개시	2
규칙 3	조정합의	3
규칙 4	조정인의 선정	4
규칙 5	요금 및 비용	6
규칙 6	조정의 진행	7
규칙 7	조정절차의 종료	9
규칙 8	화해 합의	10
규칙 9	비밀유지	11
규칙 10	일반 조항	12
부록 A	SIMC 신청서 양식	13
부록 B	요금표	21
부록 C	화해 합의 양식	22
SIAC-SIMC Arb-Med-Arb 프로토콜		23
표준조항		28
결제정보		30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1 규칙의 적용

- 1.1 본 조정규칙(이하, "본 규칙")은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이하, "SIMC")가 처리하는 모든 조정 사건에 적용된다. 단,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와 SIMC 간의 Arb-Med-Arb 프로토콜(이하, "AMA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되는 조정사건의 경우, AMA 프로토콜의 규정에 맞게 필요에 따라 본 규칙이 수정된다.
- 1.2 당사자들은 언제라도 조정인 및 SIMC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 규칙의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2 조정의 개시

- 2.1 본 규칙에 따라 조정을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 혹은 당사자들은 부록 A 서식에 따른 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부록 B에 기재된 조정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2 신청서 사본은 조정의 모든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3 조정합의¹

- 3.1 SIMC 에서 조정을 한다는 합의에 기하여 조정이 신청된 경우, 그와 같은 합의에 대한 증거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3.2 SIMC 에서 조정을 한다는 합의에 기하여 조정이 신청된 경우, SIMC 는 신청서의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SIMC 가 신청서의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 신청서 제출일 및 조정절차 개시일로 간주된다.
- 3.3 SIMC 에서 조정을 한다는 합의에 기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이 아닌 경우, SIMC 는 조정 제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당사자들이 이 제안을 고려함에 있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때 SIMC 가 당사자들에게 조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서면 확인서를 발송하는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간주한다.

¹ AMA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되는 조정 사건의 경우, 본 규칙 제 3.1 조 내지 제 3.4 조가 AMA 프로토콜에 따라 수정된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 3.4 SIMC 에서 조정을 한다는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SIMC 는 당사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정인의 선정

- 4.1 당사자들은 조정을 수행할 조정인을 공동으로 지명하여 SIMC 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인의 지명은 SIMC 의 조정인 명부 또는 다른 어떠한 명부에서 할 수 있다.
- 4.2 조정이 개시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조정인 지명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SIMC 가 자체 조정인 명부에서 조정인을 선정한다. SIMC 명부에도 적절한 조정인이 없을 경우, SIMC 는 협력기관의 명부 중에서 조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 4.3 조정인을 확인 또는 선정함에 있어서 SIMC 는 조정인 후보자의 국적, 언어, 특기, 자격요건, 전문분야, 경험 및 가용성 등과 같은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 4.4 당사자들은 본 규칙의 조항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조정인을 지명하거나 SIMC 에게 한 명 이상의 조정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SIMC 는 복수의 조정인에 의한 조정을 당사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상 “조정인”이라는 용어는 “조정인들”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 4.5 조정인의 확인 또는 선정 이전에, 조정인 후보자는 조정인 선정에 대한 본인의 수락 여부, 가용성,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하여 즉시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 4.6 각 당사자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관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조정인의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할 수 있다.
- 4.7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로 조정인 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SIMC 및 모든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SIMC 는 이와 같은 이의 제기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다른 조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 4.8 SIMC 는 조정절차 도중이라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조정인 또는 어느 당사자가 지적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조정인을 교체할 수 있다.

5 요금 및 비용²

- 5.1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부록 B 에 따른 조정신청요금을 SIMC 에 지불해야 하며, 이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 5.2 조정절차 개시 이후, SIMC 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부록 B 에 따른 SIMC 의 관리 비용, 조정인 수당 및 SIMC 와 조정인의 기타 경비를 처리하기 위한 예납금을 일회 또는 수회 납입하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 5.3 만약 요청한 예납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SIMC 는 조정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 5.4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SIMC 는 본 규칙에 따라 조정절차에 소요된 총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이 때 당사자들이 초과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사자들에게 반환해야 하고, 미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사자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² AMA 프로토콜에 따른 조정 사건의 경우, 본 규칙 제 5.1 조 및 제 5.2 조가 AMA 프로토콜에 의해 수정된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 5.5 당사자들간에 달리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가 아닌 한, SIMC 가 납부 요청하는 모든 예납금 및 경비는 당사자들이 균분하여 납입한다.
- 5.6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예납금 및 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그 금액을 납입할 수 있다.
- 5.7 당사자들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가 아닌 한, 각 당사자가 각자 지출한 기타 비용들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6 조정의 진행

- 6.1 SIMC 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조정 장소를 결정하고, 조정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 a. 적절한 조정인 선정
 - b. 조정합의 체결에 대한 당사자 조력
 - c. 관련 정보 및 문서 교환 지원
 - d. 적절한 조정 장소 및 조정 날짜 조율
 - e. 행정 및 물류 지원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f. 사건 관리 서비스 제공

- 6.2 당사자들은 조정절차에 사용될 언어(들)를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SIMC 가 명시하는 기한 내에 SIMC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SIMC 는 조정인과 협의하여 조정절차에 사용될 언어(들)를 결정한다.
- 6.3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대리하여 조정절차에 참석할 모든 대리인 및 전문가의 이름을 SIMC 가 명시하는 기한 내에 SIMC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4 당사자들은 적어도 예정된 조정일 10 일 전 또는 조정인이 명시하는 날까지, 주장서면 및 모든 관련 자료를 SIMC 에 제출하고 당사자들 간에 교환해야 한다.
- 6.5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SIMC 는 조정과 관련한 일정표를 비롯하여 조정 방식 및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조정 전(前) 사전회의를 마련할 수 있다. 참고로, 사전회의는 대면회의, 화상회의 또는 다른 전자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 6.6 조정 방식이나 절차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공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 6.7 조정절차 이전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인은 구두 및 서면, 대면 또는 전자적 수단 및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해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또한 조정절차 도중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절차 이후에도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당사자들과의 교신이 허용된다.
- 6.8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동의할 경우 기술적인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또는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 6.9 모든 당사자들은 조정을 준비함에 있어 그리고 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7 조정절차의 종료

- 7.1 본 규칙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종료된다:
- 당사자들이 서면 화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또는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 b. 다음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정 이후에 SIMC가 서면으로 종료확인서를 발부한 경우:
- i.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SIMC, 조정인 그리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조정 철회를 통지한 경우;
 - ii. 조정인이 SIMC와 당사자들에게 조정절차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iii. SIMC가 조정과 관련하여 정해진 기한(연장된 기한 포함)이 만료되었다고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또는
 - iv. SIMC가 본 규칙에 따라 납입해야 할 금액이 납입 기한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당사자 혹은 당사자들에 의해 납입되지 않은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8 화해 합의

- 8.1 조정 과정에서 성립된 모든 화해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자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이를 서명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 8.2 참고로, 화해 합의는 전자기록의 형태로 작성될 수 있으며 전자 서명으로 체결될 수도 있다.
- 8.3 화해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인은 즉각 그 사실을 SIMC 측에 통보하고 합의서 사본을 SIMC 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 8.4 화해 합의는 부록 C 서식의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9 비밀유지

- 9.1 당사자들간의 별도 합의, 2017 싱가포르 조정법 및 기타 준거법의 범위 내에서:
- a. 조정절차는 비공개여야 하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 b. 당사자들간의 화해 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단, 합의 내용의 이행 또는 집행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9.2 화해 합의를 위해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교신 일체(화해 합의 제안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및 당사자가 표현한 견해 등 조정 포함)는 준거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중재 또는 다른 유사한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 9.3 준거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모든 당사자 및 조정인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조정인은 소송, 중재 또는 다른 유사한 절차에서 본 규칙에 따른 조정과 관련하여 증언할 수 없다.
- 9.4 당사자들, 당사자들의 대리인과 전문가 그리고 조정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조정에 참석할 수 없다. 단, 당사자들 및 조정인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9.5 조정과 관련하여 속기록 또는 정식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단, 화해 합의를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일반 조항

- 10.1 조정인, SIMC 및 그 직원들은 조정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사기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부록 A

SIMC 신청서 양식

신청 당사자의 상세 연락처정보	
개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이름	
회사 또는 단체(해당시)의 이름	
연락처(들)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참고 번호 (해당시)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신청 당사자 대리인의 상세 연락정보	
법률 사무소 명칭	
담당 대리인의 이름	
연락처(들)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참고 번호 (해당시)	
상대방 당사자의 상세 연락정보	
개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이름	
회사 또는 단체(해당시)의 이름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연락처(들)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참고 번호 (해당시)	
상대방 당사자 대리인의 상세 연락정보	
법률사무소 명칭	
담당 대리인의 이름	
연락처	
우편 주소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참고 번호 (해당시)	
다른 절차(해당시)	
<input type="checkbox"/> 법원 소송	<input type="checkbox"/> 중재
기타	
개시 일자	
장소	
현재 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분쟁 금액

청구금액 (싱가포르 달러)

반대청구금액 (싱가포르 달러)

분쟁의 성격

*분쟁의 분야/영역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기재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분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SIMC 조정예 회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조정합의에 대한 증거는 본 양식에 첨부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SIMC 조정예 회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조정합의에 대한 서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SIMC 조정예 회부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조정 기간 및 조정을 위한 가용성

대략의 조정 기간:

_____일

조정을 위해 합의/제안된 날짜

다른 당사자(들)과 아직 날짜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용이하게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가능한 날짜들을 최대한 많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인

당사자들은 SIMC 의 확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_____ 를 조정인(들)으로 지명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조정인을 지명하고자 하나 아직 그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_____ 일까지 공동으로 조정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SIMC 가 조정인을 선정 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SIMC 가 _____ 명의 조정인(들)을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선호하는 조정인의 조건 (해당시)
(예를 들어, 국적, 직업, 언어 능력,
관련 업계, 조정 방식 등)

조정의 수행

언어

당사자들은 _____를 조정절차에서 사용할 언어(들)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절차에 사용할 언어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했고, _____를 조정절차에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소

당사자들은 _____를 조정이 진행될 장소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이 진행될 장소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했고, _____을 조정 장소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선호하는 지불 방식

전신환

수표

합의 및 선언

이상 본 양식에 기재된 정보는 본인이 아는 한 진실임을 선언합니다.

신청인 이름 및 서명	일자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부록 B

요금표

요금(당사자 당)	
조정신청요금	SGD 1,000
조정인 선택 및 선정	SGD 1,000 (조정인당)
장소 예약 및 준비, 다과 준비	SGD 1,000
조정일 사전 사건 관리	SGD 2,000
조정 당일 사건 관리(하루 당, 오전 9:30 - 오후 5:30)	SGD 1,000
시간 외 사건 관리 요금(오후 6:00 이후 및/또는 주말/공휴일)	시간당 SGD 500

조정인 요금
조정인이 청구하는 커머셜 요금에 근거함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부록 C

화해 합의 양식

사건번호:

당사자 A 의 이름 / 대리인:

당사자 B 의 이름 / 대리인:

조정인(들)의 이름:

조정 서비스 제공자:

합의 일자:

합의 조건: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의 청구에 대한 완전한 최종 합의에
의하여:

[[] 는 아래 금액을 []에게 지불한다:]*

[지불일과 이자발생일 구체적으로 명시]

[기타 다른 합의 조건]*

*필요한 경우 삭제 또는 수정 가능함

당사자 A 의 서명:

당사자 B 의 서명: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SIAC-SIMC 중재-조정-중재 프로토콜
(“AMA 프로토콜”)

1. 본 AMA 프로토콜은 싱가포르 Arb-Med-Arb 조항 또는 기타 유사한 조항(이하 “AMA 조항”)에 따라 해결되도록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이하 “SIAC”)에 회부된 모든 분쟁 및/또는 당사자들이 AMA 프로토콜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 AMA 프로토콜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이하 “SIMC”)의 조정절차 도중에 화해를 통해 해결된 모든 분쟁이 중재합의의 범주에 포섭되는 것에 동의한다.
2. AMA 조항을 근거로 중재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해당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따라 SIAC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재규칙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 (i) SIAC의 중재규칙(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또는 (ii) 당사자들이 SIAC가 해당 중재를 관리하는 데 동의한 상황에서 UNCITRAL 중재규칙(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3. AMA 조항에 따라 중재절차가 개시된 경우, SIAC 사무국은 중재절차 개시일로부터 4 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AMA 프로토콜에 따른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날로부터 4 영업일 이내에 중재절차 개시 사실을 SIMC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SIAC는 SIMC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4.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 및/또는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 의거하여 SIAC 에 의하여 구성된다.

5. 중재신청서와 답변서의 교환 후, 중재판정부는 해당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해당 사건이 SIMC 의 조정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을 SIAC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SIAC 사무국은 SIMC 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기록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SIMC 에 송부한다. SIMC 는 해당 사건 기록을 수령하는 즉시 SIAC 사무국에 SIMC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음(이하 “조정절차 개시일”)을 통보한다. 이때부터 SIMC 의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중재절차의 모든 후속 단계는 중지된다.

6. SIMC 에서 처리되는 조정절차는 SIAC 사무국이 SIMC 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 개시일로부터 8 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중재절차에서의 모든 기간의 산정은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중지되며, SIAC 사무국이 중재판정부에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하는 즉시 재개된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7. 8 주 간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후(SIAC 사무국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제외) 혹은 분쟁당사자들이 8주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정을 통해 화해에 이르는 것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SIMC 는 즉시 SIAC 사무국에 (조정 결과가 있는 경우) 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분쟁의 조정을 통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 SIAC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에 중재절차의 재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통보일에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사건의 전체 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중재절차가 재개된다.

9.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화해에 이른 경우, SIMC 는 그 사실을 SIAC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가 자신들의 화해 사실이 화해 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 또는 SIAC 사무국은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부에 전달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화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관련 비용

10. 본 AMA 프로토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지 SIMC 조정규칙 부록 B 에 규정된 대로 SIAC 에 사건 신청요금(반환 불가)을 납입하여야 한다.

11. AMA 조항에 따라 사건이 개시된 경우 및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자신들의 분쟁을 AMA 프로토콜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신청요금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때 SIAC 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미납된 신청요금이 있다면, 해당 사건을 SIMC 조정절차에 회부할 때 이를 SIAC 에 납입하여야 한다.

12. 나아가 당사자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SIAC 와 SIMC 각각의 요금표에 따라 예상 중재비용에 대한 선납금(이하 "중재절차 선납금")을 비롯하여 조정절차 관리 비용 및 경비(이하 "조정절차 선납금")를 SIAC 에 납입하여야 한다(이하 총칭하여 "예납금"). 예납금 액수는 SIAC 사무국이 SIMC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AMA 조항에 따라 사건이 개시된 경우 및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자신들의 분쟁을 AMA 프로토콜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조정절차 선납금은 SIAC 가 요청한 중재절차 선납금 납입시 함께 납입하거나, 해당 사건을 SIMC 조정절차에 회부할 때 납입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14. 중재규칙과는 별개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예납금 부담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액을 납입할 수 있다. SIAC 사무국은 예납금의 전액 또는 일부 미납 여부를 SIMC 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SIAC 는 당사자들에게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예납금 또는 중재절차 선납금 보유액으로부터 SIMC 에 조정절차 선납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표준조항

싱가포르 Arb-Med-Arb 조항

계약의 존재, 효력 또는 해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현재 시행중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규칙("SIAC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가 처리하는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SIAC 규칙은 이 중재조항의 일부로 간주한다.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한다.³

중재판정부는 _____(인)의 중재인(들)로 구성한다⁴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_____(어)로 한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중재절차 개시 후 해당 분쟁이 현재 시행 중인 SIAC-SIMC Arb-Med-Arb 프로토콜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의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을 다하기로 합의한다.

³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중재지를 적시 합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중재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싱가포르 대신 선택하고자 하는 도시와 국가를 기입합니다. (예: [서울, 대한민국]).

⁴ 홀수 즉, 1 인 혹은 3 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조정절차 도중에 분쟁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 SIAC가 선정한 중재판정부에 그 사실이 통보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화해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SIMC 조정 조항

분쟁 발생 이전에 사용할 경우: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 여부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비롯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해석-차이는 당시 시행중인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의 조정규칙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조정에 회부한다.

분쟁 발생 이후에 사용할 경우: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 여부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비롯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해석-차이는, 기타 다른 절차가 이미 개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행중인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의 조정규칙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조정에 회부한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결제정보

수표

지불은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를 수취인으로 하는 현지 수표로 할 수 있으며,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32 Maxwell Road #02-07
Singapore 069115
Attn: Accounts Department

계좌이체

은행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모든 거래 수수료는 지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본 센터의 은행 계좌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수취인: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은행계좌:	003-925159-9
은행 지점:	DBS MBFC Branch
은행:	DBS Bank Ltd
은행 주소:	12 Marina Boulevard DBS Asia Central @ MBFC Tower 3 Singapore 018982
Swift Code:	DBSSSGSG

송금식별의 편의를 위해, 송금 당사자 이름, 사건 번호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송금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납금의 용이한 추적을 위해, 당사자는 송금 직후에 송금기록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